

## **21 NYCRR § 1021.2 차량 통행 제한 및 주행 중 중량 측정 위반 모니터링**

---

(a) 본 조항 1021.1 에 명시된 통행료는 다음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(1) 전체 너비(하중 포함):

터널 - 8 피트 6 인치

교량 - 9 피트 6 인치

(2) 도로면으로부터의 전체 높이:

터널 - 12 피트 1 인치

교량:

로버트 F. 케네디(Robert F. Kennedy)

할렘강(Harlem River) 리프트 경간:

맨해튼(Manhattan) 출발: 12 피트 11 인치

맨해튼(Manhattan) 진입: 14 피트

브롱크스 트러스(Bronx Truss) 경간

브롱크스(Bronx) 출발: 13 피트 3 인치

브롱크스(Bronx) 진입: 14 피트

퀸즈(Queens) 현수경간:

퀸즈(Queens) 출발: 15 피트 2 인치

퀸즈(Queens) 진입: 14 피트 9 인치

브롱크스-화이트스톤(Bronx-Whitestone)

브롱크스(Bronx) 방면: 15 피트

퀸즈(Queens) 방면: 15 피트 1 인치

스로그스 넥(Throgs Neck)

브롱크스(Bronx) 방면: 15 피트 2 인치

퀸즈(Queens) 방면: 14 피트 11 인치

크로스 베이 참전 용사 기념(Cross Bay Veterans Memorial)

북측 방향

94 번가 출발: 15 피트 2 인치
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서행 방향 차로  
출발: 13 피트 10 인치
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동쪽 방향 차로  
출발: 14 피트 1 인치

남측 방향

95 번가 진입: 15 피트 2 인치  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서행 방향 차로 진입:  
15 피트 2 인치  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동쪽 방향 차로 진입:  
14 피트

#### 마린 파크웨이-길 호지스 기념

##### 북측 방향
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서행 방향 차로 출발:  
14 피트 1 인치  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동쪽 방향 차로 출발:  
15 피트 1 인치

##### 남측 방향
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서행 방향 차로 진입:  
15 피트 1 인치  
비치 채널 드라이브(Beach Channel Dr) 동쪽 방향 차로 진입:  
12 피트 11 인치

#### 헨리 허드슨(Henry Hudson) - 12 피트

#### 베라자노-내로우즈(Verrazzano-Narrows)

##### 하층 교량:

서쪽 방향: 13 피트 7 인치  
동쪽 방향: 13 피트 6 인치

##### 상층 교량:

서쪽 방향: 14 피트 6 인치  
동쪽 방향: 14 피트 5 인치

#### (3) 중량:

터널 및 교량 - 뉴욕시 규정집 34 편 제 4-15(b)조에 규정된 제한 사항.

#### (b) 본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메트로폴리탄

교통공사(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) 중앙 허가 사무소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진입 혹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. 본 조항 1021.1 에 명시된 통행료 외에도, 특별 취급이 필요한 차량은 다음 금액

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. (1) 조항 1021.1 에 명시된 NYCSC E-ZPass 이외의 요금 수단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(일반적으로 우편 통행료라고 함) 또는 (2) 요금 55 달러. 후자의 경우, 해당 차량에 귀속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국의 단독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(c) 주행 중 중량 측정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.

(1) 책임. 차량 및 교통법 제 385-a 조에 따라 소유자가 해당 법 제 385 조를 위반한 경우, 그 위반 건당 650 달러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.

(2) 추가 벌금. 책임 통지서 발송 후 차량 소유자가 30 일 이내에 답하지 않을 경우, 차량 및 교통법 제 385-a 조 (e)항에 따라 25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(3) 책임 통지. 책임 통지서는 차량 및 교통법 제 385-a 조 (g)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뉴욕시 주차 위반국(New York City Parking Violations Bureau)의 국장이 규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(4) 시행일. 해당 조항은 차량 및 교통법 제 385-a 조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.